



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주택 공급 관련 차별 및 편견에 따른 학대 금지법

- 1 뉴저지주 차별금지법(LAD)은 주택 공급 시 다음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보호받는 많은 특성 중에서도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종로,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 및 합법적 소득원. 이 금지 조항은 부동산 중개인, 주택 공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임대 에이전트는 세입자가 이슬람 교인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인은 흑인 가족에게 특정 이웃의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 주택 공급자는 또한 세입자의 "합법적 소득원"에 기초하여 잠재적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합법적 소득원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또는 보조금과 실업 수당, 자녀 양육비, 위자료 및 추가 보장 소득을 포함한 기타 합법적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섹션 8 바우처, SRAP(주 임대 지원 프로그램) 또는 TRA(임시 임대 지원) 바우처로 집세를 낼 계획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 또는 제한을 첨부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예: "섹션 8 거절").
- 3 LAD는 주택 공급 시 편견에 기초한 학대를 금지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편견에 따른 학대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주택 공급자는 그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한 시점에 그러한 학대를 중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입자에 의한 학대와 주택 공급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한 학대가 포함됩니다. "대가성(Quid pro quo)" 성적 학대—예를 들어, 건물 관리인이 방을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성행위나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4 주택 공급자는 장애 세입자에게 필요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애 세입자가 주거지를 이용하고 생활을 즐기기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감정 지원을 위한 보조동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주택 공급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완동물 금지" 정책이 있더라도 감정 지원을 위한 보조동물을 허락해야 합니다.
- 5 주택 공급자와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 사유로 세입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LAD에 따라 권리를 행사했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행위.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1.833.NJDCR4U](tel:1833.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NJ CIVIL RIGHTS
@CivilRightsNJ #CivilRightsNJ #StandUpAgainstHate

